KOSHA GUIDE

C - 69 - 2022

- (4) 과부하방지장치, 권과방지장치 등 방호장치에 대하여 인증기관(검정기관)의 인증 합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5) 작업장소의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최대 작용하중에 대응할 수 있는 지지력이 확보되었는지 검토하고, 지지력이 부족할 경우 지반 보강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6) 운전원 또는 근로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정격하중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.
- (7) 현장의 지반 상태를 고려하여 제한속도를 지정하고 준수하여야 한다.
- (8) 이동식 크레인은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(수평선회를 말한다)로 운반 하는 용도이외의 사용을 금하여야 한다.
- (9) 운전원의 자격, 검사증, 보험가입을 확인하여야 하며, 작업조건에 따라 숙련 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10) 신호수를 배치하여 크레인 작업표준 신호지침 및 KOSHA GUIDE C-48-2022 (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 지침)의 신호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.
- (11) 작업구역 내에 출입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작업 관계자외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.
- (12) 운전원, 작업 책임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(13) 승차석 이외의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않아야 한다. 다만, 작업장소의 구조, 지형 등이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기가 곤란하여 이동식 크레인 중 기중기를 한국산업표준[KS B ISO 12480-1:1997 크레인 안전한 사용-제1부:일반사항의 부속서(C.1~C.4)]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에 따라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. 이 경우, 관리감독자의 통제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.
- (14) 비, 눈,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철골작업 중지 또는 제383조 악천후 및 강풍시 작업 중지를 준용하여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.